

의안번호	제 72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729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 실태조사, 육성지원 (안 제4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8조~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농장, 법인, 단체 등의 시설
2.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치유농업시설

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 및 일반현황
2. 매출 등 경영활동 현황
3.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육성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기반 조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업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
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업·농촌,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치유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치유농업 연계 농촌의 신규시장 창출 및 치유 농업 산업의 실용화 촉진 필요
- 농업체험(동·식물, 곤충, 경관 등)의 치유효과가 인정되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확산

2. 비용 발생 요인

- 시군 치유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도내 치유농업 교육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7조(육성지원)
 -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치유농업육성 시범 : 5개소('22~'26) / 350백만원
 - *개소당 70백만원
- 농촌자원 활용 마을형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 5개소('22~'26)/ 500백만원
 - *개소당 100백만원
- 곤충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 5개소('22~'26)/ 350백만원
 - *개소당 70백만원
-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치유농업과정) : 연 33.2백만원/ 166백만원('22~'26)
 - 교재 제작 및 사무관리비 등 : 50명 × 434천원 = 21.7백만원
 - 교육 재료비 : 50명 × 80천원 = 4백만원
 - 행사실비 보상금 : 7.5백만원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2~'26년까지 총 5년간
- 소요금액 : 1,366백만원(국비 600, 도비 166, 시군비 600)

다. 재원조달방안

- 치유농업 육성 시범 : 국비 50%, 시군비 50%
- 농촌자원 활용 마을형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 국비 50%, 시군비 50%
- 곤충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 국비 50%, 시군비 50%
-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치유농업과정)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출		273,200	273,200	273,200	273,200	273,200	1,366,000
치유농업 육성 시범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농촌자원활용 마을형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곤충자원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정예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치유농업과정)		33,200	33,200	33,200	33,200	33,200	166,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보조금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지방교부세						

6. 작성자 : 기술지원국 농촌자원과장 신형섭